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11명
- 나. 의안번호 : 제818호
- 다. 발의일자 : 2019. 8. 6
- 라. 회부일자 : 2019. 8. 13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 그 추진 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4조는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추진실적의 시의회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시행계획 수립시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